

❖ 정부시책 ❖

금년부터 정부조달시장 개방

금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의 수입증가요인이 발생, 새로운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는 물품과 서비스는 연간 40조원(4백76억달러)으로 이중 개방대상은 20조8천억원(2백48억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와 물품경쟁력이 강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정부조달시장에 가세할 경우 시장의 상당폭을 넘겨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1백억달러 이상의 조달서비스 및 물품 수입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년부터 우리나라도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게 돼 중앙정부 지방정부 23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품 및 서비스의 경우 13만 SDR(약 1억4천3백만원, 1SDR은 1천1백원), 건설서비스는 5백만 SDR(약 55억원) 이상일 경우 개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됐으나 우리의 경우 신규가입국임이 감안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적용토록 했다.

■ 우리나라 양허 범위

(단위 : 만 SDR)

구 분	양 허 기 관	양 허 범 위
정 부 (중앙기관)	42개 중앙 행정기관 (안기부,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비기위 제외)	물품, 서비스 : 13(약 1억5천만원) 건설 : 500(약 55억원)
지 자 체 (지방기관)	서울시 등 6개시와 9개도	물품, 서비스 : 20(2억2천만원) 건설 : 1500만
기 타 기 관 (정부투자기관)	한전, 한국통신등 23개 정부투자기관(한국통신, 한전 일부품목 제외)	물품 : 45(약 5억) 건설 : 1500만(약 165억원)

* 1 SDR은 약 1,100원(약 US\$ 1.4)

통산부, 試製品개발자금 2천억 支援

정부는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금년에 총 2천억원의 시제품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 자금의 지원대상인 자본재 전략품목을 발굴키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기계·소재·전자·전기·섬유등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자본재전략품목개발을 위한 수요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조사·발굴키로 한 전략품목은 △연간 수입액 500만달러 이상인 품목으로 첨단핵심제품 및 부품·소재 또는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을 통한 고성능·다기능품목이다.

또 양산품목은 △기업이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양산설비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번 전략 및 양산품목 발굴사업에 참여하기는 희망하는 기업은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전기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배포받아 접수시키면 된다.

정부는 신청을 받아 도출한 품목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7년도 자본재 전략개발품목'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전략개발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에 대해 관련기업의 사업계획서를 공모, 확정된 다음 소요개발비의 80%까지 지원할 계획인데 선정과정에서 공동개발 신청품목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원자금인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조건을 보면 연리 7%,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1개 품목당 지원한도 30억원이다.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정부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한 '자본재산업 육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95년에 70개, '96년에 213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 사업은 과거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의 다품목소액지원방식에서 탈피, 개발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을 고부가가치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품목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성공시 자본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6년도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1. 추진방향

- 자본재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생산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품목을 발굴
- 품목발굴부터 자금지원까지의 기간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개 취급기관과 국립기술품질원이 공동검토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통상산업부에서 최종 선정 후 고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2. 고시품목선정 기준

가. 전략품목

- 연간 수입액이 500만불이상인 품목으로서 첨단 핵심제품 및 부품·소재분야
-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통한 고성능·다기능 품목

나. 양산품목

- 기업이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양산설비자금 등의 지원이 필

요한 품목

3. 신청서류

가. 전략품목

- ① 전략품목개발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② 개발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또는 외국카다록 등) 1부

나. 양산품목

- ① 양산대상품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② 개발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등) 1부

4. 신청서류

가. 전략품목

- ① 신청업체에서 4개 취급기관에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
- ② 4개 취급기관과 국립기술품질원 공동 검토
- ③ 산·학·연·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 ④ 통상산업부 총괄 담당부서에서 품목조정 및 종합 검토후 고시

나. 양산품목 : 전략품목 선정 절차와 동일

5. 품목선정시 고려사항

- 수요기업과의 연계개발, 산·산, 산·학, 산·학·연 공동개발 신청품목에 대하여는 우대할 계획임
- 동일품목을 여러 취급기관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기지원된 업체는 지원품목이 개발완료 시점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진담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중복개발이 불가피한 업체는 예외 인정

6. 지원사항

가. 전략품목 : 산업기술자금중 시제품 개발자금

- 지원규모 : 2,000억
- 용자조건 : 금리 7% 용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분할 상환)
- 용자한도 : 30억원 이내

나. 양산품목 : 시중은행의 일반 시설자금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96. 12. 16~'97. 1. 15

8. 추진일정

- '96. 12월 초순 : 기본계획수립
- '96. 12. 16~'97. 1. 15: 전략품목 수요조사 안내 및 신청 접수
- '97. 1월 : 도출된 과제에 대한 평가
- '97. 2월 : 자금 용자 신청 공모
- '97. 3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최종 확정
- '97. 4월 : 자금 추천 및 용자

9. 신청안내 및 접수기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총괄담당)
전화 (02)500-2477/80 전송 (02)503-9471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금융지원팀
전화 (02)369-7821/4 전송 (02)369-7898/99
 - 한국전자산업진흥회부품산업부
전화 (02)553-0941/7 전송 (02)555-6195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진흥부
전화 (02)3476-0271/4 전송 (02)3476-0275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진흥부
전화 (02)528-4013/4 전송 (02)528-4069/70
- ※ PC 통신 : 나우누리 GO MOTIE 6. 통상/무역, KOTIS GO MOTIE 21. 통상/무역, 하이텔 일반자료실 2번 경영경제 GO 자본재 또는 전략품목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참여업체의 계획서를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199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계획

1.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전략기술	- 별첨에 열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상제품”에 속하는 기술 -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기술 수요조사사업에 의하여 도출된 기술이거나 제1회 중소기업기술박람회를 통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이전기로 한 기술
일반기술	- 100PPM품질혁신·공장혁신 등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사업 또는 이업종교류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기술 - 위에서 열거한 기술 이외의 기술로서 공정개선·원가절감·에너지절약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기술

2.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전략기술은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일반기술은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함.
- '97년도 정부출연금 규모 : 300억원

3. 신청자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하고 주식 미상장인 중소기업체 다만,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인정함.
 - ① 소프트웨어업(표준산업분류 72200, 72300 및 72400)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215)
 -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체
 -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

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기업체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서울지역은 국립기술품질원, 요업분야의 기술은 요업기술원)
- 접수기간 : 1996. 12. 2일부터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5.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의 신청은 1개 중소기업당 1

개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여타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30%를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6. 문의처

- 중소기업청(TEL : 503-7934)

■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 제품(전기·전자 분야)

기술 및 제품	세 부 내 용
전 기 · 전 자 부 품	- 반도체(소자·재료 및 장비) 및 칩부품 - 소형전동기, 광 및 자기기록매체, 다층 PCB 및 동박, 센서, 자기헤드, EMI부품, 리이드프레임, 세금선, 고순도규소봉 및 박판, 수정진동자, 하이브리드 IC, 스피커 - 2차전지(자동차용 연축전지는 제외) - 고기능성 트랜스포머(로타리식·아몰퍼스형·150KHz이상·고주파·Coilless식·스위칭전원식) 및 부품
영 상 · 음 향 기 기	- 신호처리가 디지털방식인 영상 및 음향기기(TV·거치형 오디오등 완성품은 제외)과 관련 부품 - 디스플레이방식이 액정 또는 평판에 의하거나 휴대가능한 영상기기 및 관련 핵심부품

기술 및 제품	세 무 내 용
컴 퓨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bit이상의 컴퓨터(휴대형, banking용 및 유통용 포함) 및 컴퓨터 주변기기 - CAD, CAM, CIM 등 컴퓨터를 응용한 자동화시스템 및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PLC)
통 신 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처리가 디지털방식인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 위성방송수신기(디지털방식의 것) - 안테나(주파수 3MHz-300GHz 송·수신용에 한함)
전자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진단기기, 단층촬영장치, 생체계측기기, 수술 및 치료용기기, 자동생화학분석기기 및 레이저치료기 - 원격조정에 의한 환자 종합감시장치
계량·계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 및 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계량·계측기기(전자식 전력량계 포함) - 전기적 특성과 환경·방사선·공해등의 자동측정시스템 및 원격자동 계량·계측시스템 - 기준기급 물리측정기구
전력전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버터·컨버터·모타드라이버등 스위칭신호방식에 의한 전력변환장치 및 관련부품(PLC포함) - 교통, 전력, 환경 및 화재등 각종 시설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자동제어장치 및 부품
전 력 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기 및 관련부품 - 154KV급 이상의 송·변전기기(변압기·철탑등 완성품은 제외), 배전 자동화용 전력기기(몰드식 변압기 포함) - 진공차단기, SF6가스개폐기와 전기·전자회로 보호용기기(관형퓨우즈, 플러그 및 썸, 소켓, 콘센트는 제외)
전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플렉스 와이어하네스(자동차용 포함), 특수용 전선(일반전력용 또는 통신용은 제외), 전선연결장치 및 접속기구
전 동 공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력을 이용한 공구
전기기구 및 부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 전기기구(유도가열·프라즈마가열 및 할로젠이용제품에 한함) - 조명기기(3과장·5과장 형광제, 콤팩트형 형광등, 무전극 방전등, 광학용 할로겐램프), 절전형 안정기 - 22.9KV이상의 피뢰기 및 ZnO소자, 역률보상장치, 카본부러쉬, 초고압용 애자, 보호계전기 - 손목시계용 무브먼트(수정발진자를 사용한 것에 한함)

재경원, 法人稅 신고서류 44種 생략

정부는 금년부터 매출액 또는 자산 100억 원 이하인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총 89종의 첨부서류 중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 44종의 각종 조정명세서를 보관만 하고 제출은 하지 않도록 했다.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공과금에 소금수입업체가 소금안정기금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특정물질(CFC, Halon) 제조·수입업체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 유조선보유업체가 한국해양오염방지조합에 납부하는 부담금 등을 추가했다.

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전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동일한 품목을 이전 후의 공장에서 생산해야만 각종의 세제 지원을 했으나 금년부터는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세제분류내의 다른 품목'을 생산하면 세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 費目에 외부연구시설의 이용료,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개발비,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도비 등을 추가하고 엔지니어링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비, 직업훈련부담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등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으로만 허용키로

했다.

또 세액공제대상이면서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던 직업훈련용 설치·구입비,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소기업인력개발지원비등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으로 추가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이 내용들이 담겨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 등 11개 내국세법의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화절차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중 조감법시행령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설비를 '대기업이 1년 이상 사용한 설비로 사무자동화기와 투자세액공제대상인 기술·인력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 특정설비'로 정했다.

또 이처럼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대기업이 이미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세액을 예외적으로 추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만약 대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를 3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근로소득 비과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인 스톡옵션(주식

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벤처기업의 범위를 창투회사가 투자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또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실시하려면 이 사실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증권위에 등록·공시하도록 했다.

스톡옵션 부여대상 종업원은 △부여받은 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하게 되는 임직원, △대주주(총발행주식의 10% 초과소유자 및 제1대주주)인 임직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등을 제외한 임직원이고 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는 5천만원이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획득한 배당소득을 초과유보소득과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해외소득을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촉진키로 했다.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세법상의 평가방법도 원가법만 인정, 보유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손익을 반영토록 했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을 가산, 양수시점에 과세키로 했다.